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5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허영  
어기구·이원택·박민규  
윤준병·백선희·조계원  
오세희·김교홍·신정훈  
문금주·정준호·정진욱  
조인철·이개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업·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22항을 제2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6항(종전의 제22항) 중 “제20항까지의”를 “제25항까지의”로, “추징 절차 등에”를 “추진 절차,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 제24항에 따른 최고가격 설정 등에”로 한다.

②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등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등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2.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 난방 또는 연료비 지원
3. 그 밖에 농림어업 에너지 비용 안정에 필요한 지원

④ 정부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등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
  2.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격
- ㉕ 정부는 제24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 공급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으로 인하여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6조의2제22항부터 제2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설>

㉔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 면세유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등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

2.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격

㉕ 정부는 제24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 공급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으로 인하여 석유판매업자등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㉖ -----제25항까지의-----  
-----  
-----  
-----  
-----추징 절차,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 제24항에 따른 최고가격 설정 등에-----

